

제 1465 호  
1989. 12. 3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 공보관 유 천 수  
전화 : 731-6111~3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 735-3337

# 시 보

## 차 례

● 공문시행	
불응용물관리전환 .....	3
● 규    칙	
제2320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중개정규칙 .....	5
제2321호 서울특별시도로수의자부담금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	5
제2322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	5
● 고    시	
제 551 호 1990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예산고시 .....	27
제 553 호 시영아파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27

(이면계속)

일																			
박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제 554 호	시영아파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8
◎ 공 고		
제1048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및폐기공고	28
◎ 구 고 시		
제 25 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29
제 27 호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시행허가정경	29
제 28 호	도시계획사업(하천)실시계획인가	30
제 29 호	주택개발계획개발금호제1구역제4지구조합경관일부변경인가	30
제 30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변경	31
제 32 호	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시행허가변경	31
제 3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32
제 92 호	도시공원시설위탁관리허가	32
제 10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변경허가 (제9차)	32
제 132 호	도시계획사업(공용외경사)실시계획인가	33
제 515 호	주구중심시설건축사업계획승인	33
◎ 구 공 고		
제 109 호	관인개각공고	34
제 109 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	36
제 11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37
제 11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37
제 157 호	동판인개각사용승인공고	38
제 516 호	도시계획사업(연구시설)시행공람공고	39
◎ 사업소고시		
제 38 호	하천외침용허가기간연장허가	39
◎ 사업소공고		
제 1 호	보라매공원시설(체육관)관리위탁허가	40
◎ 사 령		

**공 문 시 행**

(관 인 생 탁)  
서 울 특 별 시

교 통 02637-39946

720-3838

'89. 12. 22.  
(3년)

수 신 : 해당부서

제 목 : 관리전환소요대상물품조회

1. 별첨과 같이 관리전환 소요물품에 대한 관리전환 소요 유무를 조회하오니 소  
요희망 부서에서는 '90년 1월 20일까지 관리전환 소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 기일내에 요청이 없을시는 소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합니다.

첨 부 : 관리전환 소요대상 품목

서 울 특 별 시 장

986

관리전환소모대상품목										
품목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구입단가	정부가액	취득년월일	상태	회계명	품소소재지
4120-009-0600	항온항습기	5CRK	대	1	42,000,000	42,000,000	1980. 7. 31	불량	일반회계	서울시제2별관
4120-009-0300	"	39RK	"	2	22,000,000	44,000,000	"	정상	"	"
4130-001-1120	냉각수탑	120RK	"	1	2,500,000	2,500,000	"	"	"	서울시 옥상
	냉각수보조탱크	2본	"	1	180,000	180,000	1987. 8. 20	"	"	"
	펌프(자동)	1/2마력	"	1	558,000	558,000	"	"	"	"
5940-028-0040	단자함(봉선)	200P	"	6	1,806,000	10,836,000	1985.11.	"	"	서울시 5층
6110-063-9075	U.P.S (C.V.C.F포함)	75KVA	"		81,200,000	81,200,000	1981. 3. 10	"	"	서울시 지하
6115-053-1616	디젤발전기 (연료탱크, 자동 동운전반포함)	150KW	"	1	10,173,000	10,173,000	"	"	"	"
6115-053-1803	"	200KW	"	1	17,661,000	17,661,000	"	"	"	"
6140-001-1250	축전기	PS-60GA	조	1	7,854,000	7,554,000	1984. 9. 15	"	"	"
	4각조립식철탑		대	1			1980. 7. 31			서울시 옥상

46-4

제146호 시

보 1989. 12. 30

**규 칙**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 12. 28

서울특별시장 고 건 **인**

◎서울특별시규칙제2320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건설관리국장"을 "주목  
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법제담당"을 "행정소송담당"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  
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 12. 28

서울특별시장 고 건 **인**

◎서울특별시규칙제2321호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시행 규칙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조례 제8조제2항"을 "조례  
제7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를 "조례 제7조  
제2항 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동항 제1호중 "조례 제8조"  
를 "조례 제7조"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조례 제9조"를 "조례 제8조"로 하며, 동  
조 제2항중 "조례 제8조 및 제10조"를  
"조례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6조중 "조례 제11조 제6호"를 "조례 제10조  
제5호"로 한다.

제7조중 "조례 제12조 제2호"를 조례 제11조  
제2호"로 하며, 동조 제1호 가목중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를 "조례 제7조 제2항  
제1호"로 하고, 동호 나목중 "조례 제8조  
제2항"을 "조례 제7조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중 "조례 제19조"를 "조례 제18조"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조례 제17조"를 조례 제15조"  
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  
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부과된  
도로수익자부담금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9. 12. 28

서울특별시장 고 건 **인**

◎서울특별시규칙제2322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연구, 지도 및 의료직공무원  
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이하 "연구·지  
도 및 의료직규정"이라 한다)"를 "지방연  
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  
다)"로 한다.

제10조 제2항 본문중 "제4호 및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지방연구·지도 및 의뢰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내부위임) ①시장은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보건환경연구소장 및 병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5급이하 공무원, 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2 제2호 다목 해당 연구관,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면직
2.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사보해제

②시장은 4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농촌지도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6급이하 공무원,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면직
2. 6급이하 공무원,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사보해제

③시장은 5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면직
2. 8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사보해제

④시장은 경찰국장 및 소방본부상에게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사보해제, 당해 기관내의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면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⑤사업소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 시험요구는 시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

중소지자의 특별임용과 9급보진직(방사선, 병리, 물리분야 한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의외 국가공무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8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종합건설본부장과 2.3급 사업소장(보건환경연구소장, 병원장 포함)"을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5급이하 공무원, 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2 제2호 다목 해당 연구관,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제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중 "지도사, 나목약사, 나목 간호사"를 각각 "지도사"로 한다.

제16조 제3항 제1호중 "6급이하 공무원, 나목 간호사"를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7급이하 공무원, 나목 간호사"를 "7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5급공무원(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6.7급중무원 포함)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5조 제1항 단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5급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하며, 동항의 표중 의사, 약사, 간호사란을 삭제한다.

제26조 제3호 본문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 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27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8조중 "지도사, 나목 약사, 나목 간호사"는 "지도사는"으로 한다.

제33조 제1항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할 수 있고,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 말한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예정인원의 일부는 심신장애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6조 제2항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 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구관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3년이상, 약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후 5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36조 제4항 본문, 제5항, 제6항, 본문, 제7항 및 제8항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각각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10조의 제3호"를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10조 제3호"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8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책 직무를 부여한다.

제49조의 제목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 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지도관, 의사, 약사, 간호사"를 "지도관"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연구. 지도 및 의료

직렬"을 "연구 및 지도직렬"로 한다.

제56조 제1항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6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5항, 시험성적 2항, 승진임용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 성적 3항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시험성적은 제2차시험성적에 의한다.

제61조 제1항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및 동조 제1항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을 각각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4조 제1항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을 각각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5조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하고, "연구. 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6조 제1항중 "의료직공무원 근무성적경정표 (별지 제44호서식)"을 삭제하고, "6중"을 "5중"으로 한다.

제67조 제1항 단서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8조 제1항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0조 제2항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p>제75조(경력·훈련성적·가점평정표) 경력 평정·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한다.</p> <p>제79조 제1항을 삭제한다.</p> <p>제80조 제2항 본문중 “경력평정표는 확인자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경력평정확인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로 한다.</p> <p>제8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①훈련성적의 평정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원 및 특수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이수한 훈련성적에 의한다. 다만, 훈련성적이 반점의 5할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성적의 평정은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전자계산 조식개발에 관한 4주이상의 일반교과 과정과 따로 총무처장관 및 내부부장관과 시장이 인정하는 직부분야별 전문교육 훈련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훈련성적이므로서 정기평정일 5년 이내에 당해</p>	<p>제급에서 받은 2주이상의 훈련성적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하위계급에서 받은 훈련성적(연구사, 지도사는 그 기간내에 6급이하 공무원으로 받은 성적)을 평정하고, 공무원이 교육을 받은후 5년이 경과하고 8년이 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점의 6할의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p> <p>제85조 제1항 본문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p> <p>제87조 제1항 본문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p> <p>제88조 제2항 본문 후단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p> <p>제92조 제1항 제5호, 동조 제2항 및 제102조 제1항 본문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을 각각 “연구 및 지도직규정”으로 한다.</p> <p>[별표6] 제1호중 사서란 및 수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수의란 다음에 의무원, 약무원 및 간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	---

사	서	사	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위사	가속인공수정사
의	무	일	외	무	외	사, 한외사
		치	무	치	과	외사
		의	로	기	기	외사, 한외사 치과외사
약	무	약	무	약	사	약
		약	제	약	사	약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별표6] 제2호 나목중 사서란 및 수의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수의관 다음에 의무관, 약무관 및 간호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서	사 서	1 급 정 사 서	2 급 정 사 서	준 사 서
수 의	수 의	수의사(5)	수 의 사	가축인공수정사
의 무	일 반 의 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의 료 기 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 사(5)	약 사	
	약 계	약 사(5)	약 사	
간 호	간 호	조산사(8) 간호사(8)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별표7]중 운전관 다음에 교관관, 농림관, 보건관, 위생관, 사무보조관, 방호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교 관	틀리, 국어 (한문 포함), 국사, 국민윤리, 전기이론, 통신관계법규	국사, 국민윤리	전기이론, 통신관계법규중 1과목
농 립	생물, 국어 (한문 포함), 국사, 국민윤리, 조림, 임업경영	국사, 국민윤리	조림, 임업경영중 1과목
위 생	생물, 국어 (한문 포함), 국사, 국민윤리, 공중보건, 환경위생	국사, 국민윤리	공중보건, 환경위생중 1과목
사 무 보 조	국사, 국민윤리	국사, 국민윤리	
방 호 관	국사 국민윤리	국사, 국민윤리	

[별표8]의 계목중 "연구, 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고, 동표 제2호중 축산관, 보건관 및 환경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축 산	축 산	수 의 사 (5)	수 의 사	가 축 인 공 수 정 사
보 건	보 건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5) 약 사(5) 작업치료사(8)	수의사 약 사 작업치료사(2)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위생사1급(6) 위생시험사1급(6)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방사선표준감독자(4) 간호사(6) 조산사(8)	임상병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표준감독자 영양사(3), 간호사(2) 의무기록사, 조산사(2)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간호조무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환경	환경	의사 약사(5) 수의사(5) 위생사1급(6) 위생시험사1급(6)	약사 수의사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별표9)의 농업인증 축산연구관 및 가축위생연구관과 동포의 보건연구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축산연구 가축위생연구	축산기술사, 수의사 수의사	축산기사1급, 수의사 수의사
보건연구	보건연구 환경연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관리기술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산업응용기술사 (식품제조가공) 의사 약사 수의사	수의사 약사 환경기사1급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약사	

		화공기술사 토목기술사 환경관리기술사(대기관리·수질 관리·소음진동) 산업용융기술사(식품제조·가공· 지구물리·농화학) 해양기술사	화공기사1급 토목기사1급 환경기사1급 기상기사1급 공업화학기사1급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농화기사1급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 수의사 해양기사1급					
[별표10]의 농촌지도관중 축산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 산	축산기술사, 수의사	축산기사1급, 수의사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2]중 임용예정계급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군린관중 "상사·중사"를 "일등 상사, 이등상사, 중사"로 한다.								
임 용 예 정 계 급	2 급 지도관	3 급 지도관	4 급 지도관	5 급 지도관	6 급 기능직 6 등급이상 지도사	7 급 기능직 7등급 지도사	8 급 기능직 8등급	9 급 기능직 9등급
[별표18]의 책록중 "연구·지도 및 의료직"을 "연구 및 지도직"으로 하고, 동표의 의사관· 약사관 및 간호사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19]중 점임예정계급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점 임 예 정 계 급	2 급 연구원 지도관	3 급 연구원 지도관	4 급 연구원 지도관	5 급 연구원 지도관	6 급 연구사 지도사	7 급 연구사 지도사	8 급	9 급
[별표20]중 수의직관 다음에 약무직관 및 간호직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약 무 직	약제학, 약전학,	공중보건학, 약물학, 유기약품제조화학, 무기약품제조화학중 1과목	
간 호 직	간호학개론,  간호관리학	성인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모. 아간호학중 1과목	간호학개론, 지역사회간호학, 모. 아간호학
<p>[별표21]의 제목중 "연구. 지도 및 의뢰직"을 "연구 및 지도직"으로 하고, 동표의 의뢰직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별표2], [별표2의2]는 각각 연구 및 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p> <p>[별표22]의 제목중 "연구. 지도 및 의뢰직"을 "연구직 및 지도직"으로 하고, 동표중 지방 의사란, 지방약사란 및 지방간호원란을 각각 삭제한다.</p> <p>[별표24]의 군인란중 "상사. 중사"를 "일등상사. 이등상사. 중사"로 한다.</p> <p>[별표27]의 가목중 사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p>			
사 서	1 급 정 사 서	2 급 정 사 서	준 사 서
<p>[별지 제9호 서식], [별지 25호 서식], [별지 36호 서식], [별지 제37호 서식]중 본 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4호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5조 및 별지 제40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p> <p>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p> <p>제3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뢰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때에 받은 성적평가를 임용된 직급의 근무성적의 합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1285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의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의뢰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3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 9월 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p>			

[별표 11]

기능직공무원특별임용시험의응시에필요한자격증구분표

직렬	직류	등급 분야	5 등 급	6·7 등 급	8·9 등 급	10 등 급
			철도현업	철도현업	기계 철도동력차 기능장	철도동력차 기관정비기능사 1급 철도동력차전기 기능사 1급 궤화차정비 기능사 1급 열차조작기능사 1급 위험물취급 기능사 1급 계량기사 2급
		전기	전기기기 기능장 전기공사 기능장	전기기사 2급  전기공사기사 2급 전기공사기능사 1급 전기기기기능사 1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전기기기기능사 2급	내선공사 기능사보 외선공사 기능사보  전기기기 기능사보

		전력설비기능사 1급	발전설비기능사 2급 송배전설비 기능사 2급 변전설비기능사 2급 신호보안기능사 2급	동력발전 기능사보
통신	유선설비기능장	유선설비기사 2급 무선설비기사 2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 1급 방송기기기능사 1급 데이터통신설비 기능사 1급	무선설비기능사 2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 2급  방송기기기능사 2급 데이터통신설비 기능사 2급 인쇄통신기능사 2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보
토목		보선기능사 1급 축량기능사 1급	보선기능사 2급 축량기능사 2급	보선기능사보
건축	건축시공기능장 목공기능장	건축기사 2급 건축목공기능사 1급 건축도장기능사 1급 미장기능사 1급	건축목공기능사 2급 건축도장기능사 2급 미장기능사 2급	건축목공기능사 보 건축도장기능사 보 미장기능사보

			조적기능사 1급 창호제작기능사 1급 은돌기능사 1급	조적기능사 2급 창호제작기능사 2급 은돌기능사 2급	조적기능사보 창호제작기능사 보 은돌기능사보
		환경 관리	환경기사 2급		
토 목	토 목	토목제도기능장 측량기능장 토목재료시험 기능장 콘크리트 기능장	토목기사 2급 측량기사 2급 토목재료시험 기사 2급  토목재료시험 기능사 1급 측량기능사 1급 토목제도기능사 1급 포장기능사 1급 콘크리트기능사 1급 도화기능사 1급 항공사진기능사 1급 지도제작기능사 1급 화학분석기능사 1급	토목재료시험 기능사 2급 측량기능사 2급 토목제도기능사 2급 포장기능사 2급 콘크리트기능사 2급 도화기능사 2급 항공사진기능사 2급 지도제작기능사 2급 화학분석기능사 2급	포장기능사보  콘크리트기능사 보

건 속	건 속	건축제도 기능장	건축기사 2급 조경기능사 1급 창호제작기능사 1급 은둔기능사 1급	창호제작기능사 2급 은둔기능사 2급 조적기능사 2급 건축재료시험 기사 2급	창호제작기능사 보 은둔기능사보 조적기능사보 건축재료시험 기능사보
		건축서공기능장 목공기능장	건축제도기능사 1급 건축목공기능사 1급 건축도장기능사 1급 미장기능사 1급 가구도장기능사 1급 광고도장기능사 1급	건축제도기능사 2급 건축목공기능사 2급 건축도장기능사 2급 미장기능사 2급 가구도장기능사 2급 광고도장기능사 2급	건축목공기능사 보 건축도장기능사 보 미장기능사보 가구도장기능사 보 광고도장기능사 보
	배 관		배관기능사 1급	배관기능사 2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공업배관기능사 보 건축배관기능사 보
통 신	통 신	유선설비 기능장  1급통신사	유선설비기사 2급 무선설비기사 2급 전파통신기사 2급	무선설비기능사 2급 전파통신기능사 2급	



통신	통신		유선통신기계 기능사 1급 방송기기기능사 1급 데이터통신설비 기능사 1급 2급통신사  유선통신선로 기능사 1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 2급 방송기기기능사 2급 데이터통신설비 기능사 2급 인쇄통신기능사 2급 전화교환기능사 2급 음향영상기기 기능사 2급 유선통신선로 기능사 2급	유선통신기계 기능사보  운항영상기기 기능사보 유선통신선로 기능사보 유선통신기계 기능사보
교환	교환			전화교환기능사 2급	
전기	전기	전기기기기능장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사 2급 전기공사기사 2급 전기공사기능사 1급  전기기기기능사 1급 전력설비기능사 1급  신호보안기능사 1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전기기기기능사 2급 발전설비기능사 2급 송배전설비기능 사 2급 현전설비기능사 2급 신호보안기능사 2급	내선공사기능사 보 외선공사기능사 보 전기기기기능사 보

기	기	기계가공 기능장	기계기사 2급		
		금형공구 기능장	건설기계기사 2급		
		기계정비 기능장	소방설비기사 2급		
		판금기능장		열관리기능사 2급	
		배관기능장	공기조화및냉동 기계기사 2급		
		용접기능장	중기정비기사 2급		
		제판기능장	산업안전기사 2급		
		자동차정비 기능장	계량기사 2급	계량기능사 2급	
		중기정비 기능장	자동차정비가사 2급		
		농기계정비 기능장	자동차점사기사 2급		
		고압가스기계 기능장	원동기취급 기능사 1급	원동기취급 기능사 2급	
		원동기기능장	위험물취급 기능사 1급	위험물취급 기능사 2급	
			금형공구기능사 1급	금형공구기능사 2급	
		계	계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배관기능사 2급
		기계제도기능사 1급	기계제도기능사 2급		
		용접기능사 1급	전기용접기능사 2급	전기용접기능사 보	

				가스용접전기 기능사 2급	가스용접 기능사보
				특수용접기능사 2급	특수용접기능사 보
				용접기능사 2급	
				선반기능사 2급	선반기능사보
			기계가공기능사 1급	기계가공기능사 2급	
			기계조립기능사 1급	기계조립기능사 2급	
				다듬질기능사 2급	다듬질기능사보
				정밀측정기능사 2급	
			고압가스냉동 기계기능사 1급	고압가스냉동 기계기능사 2급	
			고압가스취급 기능사 1급	고압가스취급 기능사 2급	
			자동차정비 기능사 1급	자동차정비 기능사 2급	자동차기관 기능사보
			자동차점사 기능사 1급	자동차점사 기능사 2급	자동차세시 기능사보
					자동차선기 기능사보
				공기조화기능사 2급	
			계관기능사 1급	계관기능사 2급	계관기능사보
			판금기능사 1급	일반판금기능사 2급	일반판금 기능사보
			중기정비기능사 1급	중기정비기능사 2급	중기차체정비 기능사보

				중기기관정비 기능사보
			불도저운전 기능사 2 급	
			굴삭기운전 기능사 2 급	
			토우더운전 기능사 2 급	
			스크레이퍼운전 기능사 2 급	
			기중기운전 기능사 2 급	
			벌프트릭운전 기사 2 급	
			콘크리트믹서 운전기능사 2 급	
		제작기능사 1 급	제작기능사 2 급	제작조정기능사 보
		농기계정비 기능사 1 급	농기계정비 기능사 2 급	농기계운전 기능사보
			농기계운전 기능사 2 급	
			모우터그레이더 운전기능사 2 급	
			토굴리운전 기능사 2 급	
			지게차운전 기능사 2 급	
			아스팔트휘니저 운전기능사 2 급	
			아스팔트믹싱 프랜트운전 기능사 2 급	

				공기압축기운전 기능사 2급 사리채취기운전 기능사 2급 환경기증기운전 기능사 2급 준설선운전 기능사 2급 쇄석기운전 기능사 2급 고압가스기계 기능사 1급 원동기시공 기능사 1급 열처리기능사 1급	공기압축기운전 기능사 2급 사리채취기운전 기능사 2급 환경기증기운전 기능사 2급 준설선운전 기능사 2급 쇄석기운전 기능사 2급 고압가스기계 기능사 2급 원동기시공 기능사 2급 열처리기능사 2급	
	영사	영사 및 사진	영사기능사 1급 사진기능사 1급	영사기능사 2급 보도사진 기능사 2급	보도사진 기능사보	
난방	난방	기능사 1급	열관리기능사 1급 원동기취급 기능사 2급 위험물취급 기능사 1급 고압가스냉동 기계기능사 1급 고압가스기계 기능사 1급 배관기능사 1급	열관리기능사 2급 원동기취급 기능사 2급 위험물취급 기능사 2급 고압가스냉동 기계기능사 2급 고압가스기계 기능사 2급 배관기능사 2급		
운전	운전			제 1 종운전면허 제 2 종운전면허		

화공	화공	화공기사 1급 환경기사 1급	화공기사 2급 환경기사 2급 위험물취급 기능사 1급 화학분석기능사 1급 고압가스화학 기능사 1급 고압가스취급 기능사 1급	위험물취급 기능사 2급  고압가스화학 기능사 2급 고압가스취급 기능사 2급	
선박	선박	1급항해사	2급항해사 3급항해사	2급항해사 5급항해사	6급항해사 소형선박 조종사
선박 기관	선박 기관	1급기관사	2급기관사 3급기관사	4급기관사 5급기관사	6급기관사 소형선박 조종사
농림	영림 원예		영림기능사 1급 원예종묘기능사 1급 임업종묘기능사 1급 조원기능사 1급	영림기능사 2급 원예종묘기능사 2급 임업종묘기능사 2급 조원기능사 2급	영림기능사보 원예종묘 기능사보 임업종묘기능사 보 조원기능사보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 (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 호 사(5) 조 산 사(5)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 호 사 조 산 사 영 양 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 호 사(5) 조 산 사(5)	간 호 사 간호조무사 조 산 사	
위 생 계	위 생 계		위생사 1급(3) 위생시험사 1급 (3) 영 양 사(3) 조 리 장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영 양 사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 이·미용사
	사 역		영 양 사(3) 조 리 장	영 양 사 조리사 1급 오물처리사 1급	조리사 2급 오물처리사 2급
사 부 보 조	조무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주산 1급 부기 1급 한글속기 2급 영문속기 2급 사회복지사 각급학교 교사자격 보 육 사 간 호 사 조리사 1급	자료입력 기능사보 한글타자 2·3급 영문타자 2·3급 주산 2·3급 부기 2·3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3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2급
		타자			한글타자 1급 한글타자 2·3급

사 무 보 조				영문타자 2·3급 자료입력 기능사보
	전산		전자계산기 기능사 1급 정보처리기사 2급 정보처리기능사 1급	전자계산기 기능사 2급 정보처리기능사 2급
	계 리			주산 1급 부기 1급
	사서	1급정사서(5)	2급정사서	준사서

비고: 1. 위표중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  
중은 동격인 동직류의 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종으로 본다.

2. ( )안의 숫자는 해당등급에 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후 임용예정직  
과 관련된 직부분야에 종사한 경  
력이야 한다.

3. 6등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6·7  
등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8등급에  
특별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8·9등급의 자  
격증을 소지한 후 1년6월의 기간 임용예정  
직의 업무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직  
부분야에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

4. 자격증에는 국가기능자격법의 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포함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551호

1990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 고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1990년도 서울특별

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지방재치법 제12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예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고시합니다.

1989. 12.

서울특별시 시장 고 권

연 번	회 계 별	예산액
1	○ 일반회계	1,827,485,000천원
2	○ 특별회계	2,476,287,560천원
	· 수도사업특별회계	320,460,000천원
	· 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	100,611,000천원
	· 국민주택비특별회계	18,076,000천원
	·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1,319,390,000천원
	·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118,773,000천원
	· 주택재개발비특별회계	37,555,000천원
	· 지하철문수특별회계	395,000,000천원
	· 주차장시설비특별회계	41,729,000천원
	· 유료도로비특별회계	23,563,000천원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5,976,560천원
	· 병원사업특별회계	5,504,000천원
	· 통합공과금과징특별회계	25,000,000천원
	· 특정건축물정리비특별회계	2,000,000천원
	· 주거환경개선사업비특별회계	37,950,000천원
	· 교통방송사업비특별회계	4,700,000천원

●서울특별시고시제553호

시영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서울 수서1지구 시영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4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도시개발공사 건설설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989. 12.

서울특별시 시장

가. 사업명: 수서1지구 시영아파트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성명: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광하  
주소: 서울 중구 정동 1-8 (전화 777-7416)

3. 사업시행지

가. 위치: 서울 강남구 일원, 수서동 택지개발사업지구(1브릭)

나. 대지면적 : 87,640㎡  
 다. 사업규모 : 시영아파트 2,934호  
 4. 사업시행기간 : 1989. 12. - 1991. 10.

●서울특별시고시제554호

시영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서울 대치지구 시영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45조의 규정에 외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도시개발공사 건축설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1989. 1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대치지구 시영아파트(영구임대)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성명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이광하  
 주소 : 서울 중구 정동 1-8

(전화 : 777-7416)

3. 사업시행지

가. 위 치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번지 일대 택지개발지구(1브릭)

나. 대지면적 : 39,733.17㎡

다. 사업규모 : 시영아파트(영구임대) 1,623호

4. 사업시행기간 : 1989. 12. - 1991. 10.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1048호

회계관계 공무원직인등록 및 폐기공고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1989. 11. 3 서울특별시조례 제2515호)로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관계 공무원관직 변경이 있어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인등록 및 폐기신고하고 동 규칙 제11조에 외기 이를 공고합니다.

1989. 12. 30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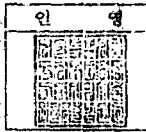
직 인 등 부 조 서

회 계 명 :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직 명 :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토지동기비세입세출의현금을담당원

사용개시일 : 1989년 12월 30일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 계 명 :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관 서 명 :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직 명 : 서울특별시 목동지구 개발사업소세입세출의현금을담당원

사용기간 : 1984년 10월 2일부터  
 1989년 12월 30일까지



**구 고 시**

**◎강동구고시제25호**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513호('89.11.29)로 도시계획 시행 결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3호('89.12.5) 지적고시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7호('89.12.6)로 도시계획(동청사 신축)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고덕동 226-4의 고덕제2동청사 신축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송파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2. 27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강동구 고덕동 226-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강동구 고덕동 226-4의 고덕제2동청사 신축

다. 사업규모:

- 대지면적: 660㎡
- 건축면적: 266.25㎡
- 건축연면적: 679.50㎡(지하1,지상2층)
- 구 조: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다.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로부터 1년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조서 참조  
 사.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조서 참조

**토 지 조 서**

연 번	지 번	지 목	면 적(㎡)	주 소	성 명
1	강동구 고덕동 226-4	대지	660	성동구 군자동 322-2	서울청년회의소 대표전용준

**◎송파구고시제27호**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시행허가 결정**

1. 송파구 고시 제25호('89.12.15)로 도시계획사업 변경시행허가된 관내 잠실동40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2와 제6조 권한의 위임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 시행허가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2. 22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송파구 잠실동4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시행
- 명칭: 한양유동

다. 사업규모(정정내용)

내 용	당초(㎡)	정정후(㎡)	비 고
건축연면적	42,660.298	42,431.578	

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0번지 한양유동(주) 김호연

마. 착공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88. 11. 1 - '89. 12. 31 변경 : '88. 11. 1 - '90. 4. 30 ]		바. 사용합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별항 ○ 토지조서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송파구 잠실동 540	대	23,971.8㎡	한양유통(주)	농어촌 개발공사의 5개법인 (근저당 설정)
○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농어촌 개발공사, 한국상업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대우증권(근저당 설정) ○ 송파구고시제28호 도시계획사업(하천) 실시 계획인가 1. 서울시 고시 제457호('89.10.14)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하천)되고 송파구 고시 제18호('89.10.19)로 지적승인된 성내천 상류복개 및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하수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2. 송 파 구 청 장		이의외의 권리명세 : 별첨조서 참조 사.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조서 참조 ○ 성동구고시제29호 주택개발재개발 금호제1구역제4지구 조합정관 일부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21호('89.9.6)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된 주택개발재개발 금호제1구역 제4지구 재개발조합의 정관을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고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변경된 정관내용은 주택개발재개발 금호제1구역제4지구 재개발조합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다. 1989. 12.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의 명칭 : 성내천 상류 복개 및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시행구간 : 송파구 마천동330의 7 - 마천동277의 23번지간 다. 사업시행규모 : 하천복개(2.5m×2.0m×2번) L=90m 도로 B=10m, L=90m 라. 사업시행자 : 송파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년간 바. 사용 또는 수용합 토지, 지목, 소유권		가. 인가내용 1) 재개발사업의 명칭 : 주택개발재개발 금호제1구역제4지구 조합정관 일부변경인가 2) 시행구역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봉동 199번지일대 19,199㎡ 3) 시행기간 : '89. 9. 8 - '92. 9. 8 4) 정관일부변경인가년월일 : '89.12.20 5) 시행자 주소,성명 : 성동구 용봉동199-1 금호제1구역제4지구주택개발재개발조합 장 박정우		

6) 정관일부변경인가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제34조의1제1항제2호	제34조의1제1항제2호 국민주택(전용면적85㎡)이하에 한하여 조합원이 희망하는 평형 1가구를 분양하고 희망평형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기준가액 다액순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p>7) 변경사유: 주택개발계발 업무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평형배정은 조합원의 희망하는 대로 평형을 배정할 수 있도록 정관 일부 변경</p> <p>◎성동구고시제30호</p> <p>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변경(기간연기)</p> <p>1. 성동구 고시 제68호('88.11.3)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에 제6조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학교)시행허가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2. 21 성 동 구 청 장</p> <p>가. 사업의 시행지: 성동구 능동25번지와5필지</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선화학원 시설 확충</p> <p>다. 사업의 규모: 시행면적-33,130.30㎡ (변동없음)</p> <p>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성동구 능동 25번지 학교법인 선화학원 이사장 박보희</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p> <p style="margin-left: 20px;">[ 착수 - '88. 11 준공 - 당 초: '89. 12. 30 - 변 경: '90. 12. 30</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변동없음</p> <p>사. 토지조서 및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변동없음</p> <p>◎성동구고시제32호</p> <p>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시행허가변경(기간연기)</p> <p>1. 성동구 고시 제18호('9.8.28)로 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시행허가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에 제6조의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가스공급설비)시행허가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2. 23 성 동 구 청 장</p> <p>가. 사업의 시행지: 성동구 군자동205-205호</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가스공급설비)시설 확충</p> <p>다. 사업의 규모: 변동없음</p> <p>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성동구 군자동 205-205호 극동도시가스(주) 대표 배윤수</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p> <p style="margin-left: 20px;">[ 착수 - '89. 8 준공 - 당 초: '89. 12. 30 - 변 경: '90. 6. 30</p>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변동없음  
 사. 토지조사 및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 변동없음

●영등포구고시제32호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12. 20

영등포구청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2. 사업주체 : 유원건설 제3직장주택조합 김중환 외 43명  
 세계물산(주) 직장주택조합 김재호 외 26명  
 지성주택건설(주) 직장주택조합 정석주 외 25명  
 대한풍운(주) 직장주택조합 맹철호 외 20명
3. 사업시행자의 위치 및 면적규모  
 가.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6가 11-1번지의 1필지  
 나. 대지면적 : 4,908.8㎡  
 다. 건축면적 : 15,013.9㎡  
 라. 규모 : 아파트11-14층, 128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마. 사업시행기간 : 1989. 12 - 1991. 3. 30

●성동구고시제92호

도시공원 시설 위탁관리 허가

1. 성동구 용답동128-3(군자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위탁관리를 도시공원법 제6조 1,2,3항에 의거 공원시설 위탁관리 허가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2.

성 동 구 청 장

- 가. 위치 : 성동구 용답동128-3
- 나. 수허가자 : 성동구 마장동784 새림아파트2동 202호 김 옥 배
- 다. 관리기간 : 1990. 1. 1-1990. 12. 31
- 라. 관리규모 - 토 지 : 10.05㎡  
 - 건 물 : 10.05㎡
- 마. 용 도 : 배 점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공원녹지과(전화 450-1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랑구고시제107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 허가(제9차)

1. 서고시 제499호('85.7.26) 및 중랑구고시제 47호('88.9.7)로 도시계획사업(학교)변경 허가된 중랑구 면목동49-3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변경허가 하겠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989. 12. 23

중 랑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중랑구 면목동49-3의4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서일전문대학 시설 확충 공사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 토 지 - 12,699.7㎡
  - 건물면적 - 8,026.86㎡
- 라.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중랑구 면목동 49-3 세방하원 대표이사 이 용 곤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81. 10. 31  
 ○ 준공예정일 [ 당초-'89. 12. 31  
                   변경-'9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변경없음**  
**아. 설계도서 : 생략**  
**◎구로구고시제132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6호('89.5.19)로 변경결정 및 구로구 고시 제76호('89.8.2)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신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임  
 1989. 12.  
 구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 : 구로구 고척동63의 12외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공용의 청사) : 구로소방서**  
**다. 사업시행 규모 :**  
 - 사업 시행면적 : 3,306㎡  
 - 건축면적 : 752.74㎡  
 - 건축연면적 : 2,840.46㎡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청(영등포소장서장)**  
**마. 사업시행기간**  
 1) 착공일 - '89. 12  
 2) 준공예정일 - '9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주소·성명 : 별첨. 끝.**

투 자 조 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유자 주소	이해관계	비 고
구로구 고척동	66-19	도 로	307	서울특별시		
"	63-12	도 로	529	서울특별시		
"	277-44	하 권	391	국세청장		
"	63-13	잡종지	292	해덕강업(주)		
"	66-18	잡종지	1,987	해덕강업(주)		

**◎서초구고시제515호**  
**주주 중심시설 건축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와 제33조 및 아파  
 트리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제7  
 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  
 거 주주중심시설 건축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12.  
 서 초 구 청 장  
**1. 사업명 : 증주중심시설 건축사업**  
**2. 사업자 : 양영실, 양봉용**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건설위치: 서초구 반포동 368구획  
 나. 대지면적: 906.12㎡(274.10평)  
 다. 건축면적: 451.04㎡(136.44평)  
 라. 건축연면적: 2,960.04㎡(895.41평)  
 마. 건설규모: 지하2층, 지상4층, 유치원1동  
 바. 사업시행기간: 1989. 12~1990. 7.

**구 공 고**















●중랑구공고제109호

관인개각공고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5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인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각 및 폐기된 관인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인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9. 12. 26

중랑구청장

1. 관인명: 중랑구 보건소장인 및 일부 동장인
2. 관인사용개시일: 1990. 1. 1. 09:00
3. 인영부: 별첨

		신		규		
인						
영						
공인명	중랑구보건소장인	중랑구보건소(계인)	면목2동장인 (민원사무용)	면목3동장인 (민원사무용)		
인						
영						
공인명	면목4동장인 (일반사무용)	면목5동장인 (일반사무용)	면목5동장인 (민원사무용)	면목6동장인 (일반사무용)	면목6동 (계인용)	
인						
영						
공인명	면목7동장인 (일반사무용)	상봉2동장인 (일반사무용)	상봉2동 (계인용)	중화2동장인 (일반사무용)	중화2동장인 (민원사무용)	

인 영					
공인명	중 화 2 동 (계 인 용)	북 1 동 장 인 (민원사무용)	북 2 동 장 인 (일반사무용)	당우 1 동 장 인 (일반사무용)	당우 1 동 장 인 (민원사무용)
인 영					
공인명	당우 2 동 장 인 (민원사무용)	당우 3 동 장 인 (민원사무용)	신 내 동 장 인 (일반사무용)	신 내 동 장 인 (민원사무용)	신 내 동 (계 인 용)
배 기					
인 영					
공인명	중 앙 구 보 건 소 장 인 (계 인 용)	중 앙 구 보 건 소 (계 인 용)	면 목 2 동 장 인 (민원사무용)	면 목 3 동 장 인 (민원사무용)	
인 영					
공인명	면 목 4 동 장 인 (일반사무용)	면 목 5 동 장 인 (일반사무용)	면 목 5 동 장 인 (민원사무용)	면 목 6 동 장 인 (일반사무용)	면 목 6 동 (계 인 용)

인 영					
공인명	면목7동장인 (일반사무용)	상봉2동장인 (일반사무용)	상봉 2 동 (계 인 용)	중화2동장인 (일반사무용)	중화2동장인 (민원사무용)
인 영					
공인명	중화 2 동 (계 인 용)	목 1 동 장 인 (민원사무용)	목 2 동 장 인 (민원사무용)	망우1동장인 (일반사무용)	망우1동장인 (민원사무용)
인 영					
공인명	망우 2 동 장 인 (민원사무용)	망우 3 동 장 인 (민원사무용)	신내 동 장 인 (일반사무용)	신내 동 장 인 (민원사무용)	신 내 동 (계 인 용)
<p>◎동작구공고제109호 도시계획안공람공고</p> <p>1. 우리구에서 입안하고자하는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입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p> <p>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가. 공람기간 : 1989. 12. 30 - 1990. 1. 13 (14일간)</p> <p>나.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다. 관련도서 : 공람장소 비치도면과 같음.</p> <p>3. 법근거 :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 2</p> <p>1989. 12. 30 동 작 구 청 장</p>		

구 분	시 설 명	위	치	규 모	비 고
신 설	공용의 청사	노랑전동 302-97의 7필지		1,253㎡	노랑전2동청사
<p><b>◎송파구공고제115호</b></p> <p>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령승인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져 도시 계획법 제2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2의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공람합니다.</p> <p>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p>		<p>고로 갈음합니다.</p> <p>3.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2. 송 파 구 청 장</p>			
가. 사업개요					
사 업 시 행 지	사 업 종 류 및 사 업 명 칭	규 모	사업기간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 및지적고시일자	
거여동 234의 16-234의 45칸	도시계획사업(도로)	B= 8m L=90m	인가일로부터 2년	서고시 제48호 (74. 3. 15)	
<p>나. 사업의 시행자: 송파구청장</p> <p>다. 사용 또는 사용할토지조서: 생략</p> <p>라.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생략</p> <p>마.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p> <p>바. 공람장소: 송파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p> <p>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토목과 (전화 410-3405~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도시계획법 제25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2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p> <p>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p> <p>3.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서를 공람공고 기간내 공람장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2. 송 파 구 청 장</p>			
<p><b>◎송파구공고제117호</b></p> <p>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가 결정 지령 승인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져</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2. 송 파 구 청 장</p>			

사업시행지	사업의종류및 사업명칭	규모	사업기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자	저적고시 일자
풍납동 72의1호-71 의 11호간(천호대학교남단)	도시계획사업 (도로)	B=30~50m L=190m	인가일로 부터2년	진고시 제107호 (89. 3. 14)	서고시제186호 (89. 4. 13)
풍납동 487의 4호 -487의 5호간	"	B=4m L=18m	"	서고시 제196호 (75. 12. 1)	서고시제196호 (75. 12. 1)

나. 사업의 시행자 : 송파구청장  
 다. 사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생략  
 라. 위치도 및 계획명면도 : 생략  
 마.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바. 공람장소 : 송파구청 토목과 및 건설  
 관리과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토목과  
 (전화 410-3405~7)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우리구 봉천1동 및 신림본동, 신림1동, 신  
 림6동, 신림8동의 민원사무전용 직인, 계인  
 을 개각 사용하고, 구 관인 및 계인을 동일  
 자로 폐기함을 관인 규정 제9조 및 관악구  
 관인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대 상 동 : 봉천1동, 신림본동, 신림1동,  
 신림6동, 신림8동
2. 사용개시 : '90. 1. 3(수) 09:00
3. 폐인일시 : '90. 1. 2(과)
4. 관인의 인영 : 별첨



●관악구공고제157호

동관인개각사용승인공고

1989. 12. 30

관 악 구 청 장

인 영				
봉인명	봉천 제1동장 인 (민원사무전용)	봉천 제1동 계인 (민원사무전용)	신림 본동장 인 (민원사무전용)	신림 본동 계인 (민원사무전용)
인 영				
봉인명	신림 제1동장 인 (민원사무전용)	신림 제1동 계인 (민원사무전용)	신림 제6동장 인 (민원사무전용)	신림 제8동 계인 (민원사무전용)

인 영			<p>구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연 구시설)시행 허가로서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2. 29. 서 초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 동 304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연구시설) 다. 사업의 규모</p>				
공인명	신림 제8동장 인 (민원사무전용)	신림 제8동 계인 (민원사무전용)	<p><b>◎서초구공고제516호</b> 도시계획사업(연구시설)시행계획공람공고 1. 건설부령지 30262-25189(88. 12. 21)호 로 공포 택지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시 연</p>				
대 지 면 적	건축 면 적	건축연면적	용 도	비 고			
14,810.8㎡중 10,025㎡	2,546.18㎡	13,255.34㎡	연구시설 (학술회관)	3동			
<p>라.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승 동 199-1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박일계 마. 사업예정기간: 착공 년월일 -1990. 1. 준공예정 년월일-1992. 12. 31. 바.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속의 권리명세(생략) 아.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생략)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정 비과로 문의 바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b>사 업 소 고 시</b></p> </div> <p><b>◎한강공원관리사업소고시제38호</b> 하천의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p> <p>하천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 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년 12. 27.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p>				
허 가 년 월 일	위 치	지 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자	
'89. 12. 27.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150번지선 (한강)	하천	20,000㎡	행글라이딩 실습장	1989.12.21 ~ 1990.12.20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 6동 1687-22	한국해양 소년 단 총 재 이 명 기

**사업소공고**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공고제1호

보라매공원공원시설(체육관)관리위탁허가

1. 보라매공원 공원시설(체육관)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탁하였기에 같은법 제6조 2항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보라매공원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9. 12. 22.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가. 시설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나. 면 적: 건물 - 968.73㎡  
          대지 - 1,138.24㎡

다. 허가의 종류: 보라매공원 공원시설(체육관) 관리위탁

라. 수허가자: 사단법인 국민생활 체육협회  
장 선 상 규

마. 수탁관리기간: 1990.1.1 - 1990.12.31

바. 시설운영계획: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에 비치된 계획서와 같음

사. 위치및평면도: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사 령**

6급공무원 전보(5급승진시험합격자 5급직위직무대. 기요원)

◎1989년 12월 27일자

령 제479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성 우	양 천 구	심사분석담당관	지방행정주사
김 중 현	동대문구	예산담당관	"
박 흥 래	중 구	시정개발담당관	"
이 광 일	송 피 구	총 무 과	"
김 장 일	성 북 구	인 사 과	"
이 준 구	노 원 구	행 정 과	"
김 준 기	동대문구	시 민 과	"
정 흥 진	성 북 구	국민운동지원과	"
임 충 빈	서 초 구	내 무 국	"
한 향 규	구 로 구	세무지도과	"
신 지 수	강 남 구	시민생활과	"
강 근 수	양 천 구	청 소 1 과	"
최 규 선	"	가정복지과	"
손 창 수	도 봉 구	상 공 과	"
박 용 선	양 천 구	농 축 과	"



상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격 급
박 용 호	성 북 구	도시계획과	지방행정주사
김 청 수	강 남 구	공 원 과	"
이 승 수	성 북 구	민 방 위 과	"
배 상 필	강 서 구	종합건설본부	"
송 수 환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
유 형 태	중 랑 구	자동차관리사업소	"
조 만 행	강 남 구	"	"
이 상 현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종 로 구	"
신 형 민	은 정 구	"	"
이 금 영	"	"	"
양 효 원	동대문구	중 구	"
홍 태 일	동 작 구	"	"
이 영 석	강 서 구	"	"
장 진 호	영등포구	용 산 구	"
유 기 남	용 산 구	"	"
안 정 화	중 랑 구	성 동 구	"
김 선 수	강 동 구	"	"
우 종 태	중 랑 구	"	"
유 집 상	중 구	"	"
홍 순 영	용 산 구	동 대 문 구	"
여 규 호	용 작 구	"	"
박 현 수	종 로 구	"	"
서 영 호	용 산 구	"	"
장 혁 린	강 동 구	"	"
김 제 수	"	"	"
권 동 준	중 랑 구	중 랑 구	"
정 일 영	종 로 구	상 북 구	"
장 창 언	노 원 구	"	"
김 진 태	관 악 구	"	"
송 영 철	서대문구	도 동 구	"
이 경 용	도 동 구	"	"
송 권 영	노 원 구	"	"
이 길 영	상 북 구	노 원 구	"
	은 정 구	은 정 구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엄현호	서대문구	서대문구	지방행정주사
백석빈	"	"	"
조성대	마포구	마포구	"
임채명	은평구	"	"
김대철	동작구	강서구	"
조병하	강서구	"	"
최성근	서대문구	"	"
유재홍	중구	구로구	"
박현수	노원구	영등포구	"
백근성	도봉구	"	"
이근도	구로구	동작구	"
백무경	"	"	"
유석형	구로구	관악구	"
정방선	관악구	서초구	"
최오민	송파구	강남구	"
이병준	서초구	"	"
정병용	관악구	"	"
황규식	동작구	"	"
김상태	"	"	"
백상현	동대문구	"	"
한준권	"	송파구	"
서진욱	성동구	강동구	"
황희진	중로구	"	"

©1989년 12월 27일자

5급 공무원 전보

병 제48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박종인	생활체육과 개발계장	중구	지방행정사무관
신운수	보건위생과 식품지도계장	성동구	"
이광수	연료과 석탄계장	연료과	"
박의선	" 석유계장	중랑구	"
정건수	건축지도과 광고물지도계장	종로구	"
여건영	환경과 환경행정계장	보건위생과	"
한상봉	운수2과 화물계장	비상계획과	"
백복용	비상계획과 동원계장	강동구	"
권백상	공무원교육원	내무부	"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영대	공무원교육원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이정판	"	"	"
이창열	성동구	동대문구	"
최양명	마포구	환경과	"
전주석	강서구	한강공원관리(사)	"
추교신	구로구	연료과	"
김중해	영등포구	서대문구	"
김기홍	서초구	구로구	"
김정근	강남구	생활체육과	"
이중철	내무국	운수2과	"
이강인	도봉구	노원구	"
김재진	상공과 공정계장	구로구	"
이승호	영등포구	양정과	"
김영송	민방위과 편성계장	관악구	"
유상호	부녀복지과 보호사업계장	동작구	"
신연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장	마포부녀복지관장	"
최영남	마포부녀복지관장 직대	부녀복지과	지방행정주사

## 6급 기술직공무원 전보(5급 승진시험합격자)

©1989년 12월 27일자

령 제48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한상주	중구	도로계획과	지방도특기사
김연호	강서구	종합건설본부	"
권판현	중랑구	"	"
송인복	마포구	중구	"
신태균	중랑구	강동구	"
정진호	상수도사업본부	관악구	"
김효실	강동구	재개발과	"
이백	노원구	강동구	"
임영중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김상철	은평구	용산구	"
이승희	송파구	종합건설본부	"
이명희	상수도사업본부	강서구	"
유연홍	중구	성동구	지방지적기사
김희영	동작구	동대문구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동적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치수과	지방기계기사
신기채	종합건설본부	도로계획과	지방전기기사
배민호	지하철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지방전기기사
서인석	동대문구	양천구보건소	지방보건기사
민현기	성북구	노원구보건소	"
◎1989년 12월 27일자 5급 기술직공무원 전보			령 제482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병하	시설계획과 가로계획1계장	중랑구	지방토목기사
홍연구	용산구	은평구	"
이익주	성북구	중랑구	토목기사
신형빈	성동구	용산구	"
◎1989년 12월 31일자 '89 하반기 정년퇴직			령 제483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영상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5항 에 의거 정년퇴직	시립 서대문병원	지방의무부기감
박종주	"	중 구	지방행정주사
김상우	"	"	"
한상철	"	용산구	"
김진탁	"	동대문구	"
유용성	"	중랑구	"
김왕창	"	"	"
권희종	"	성북구	"
안동철	"	도봉구	"
홍순익	"	"	"
최석준	"	서대문구	"
김상형	"	마포구	"
김영계	"	양천구	"
김재호	"	강서구	"
윤종욱	"	"	"
이한표	"	구로구	"
강승희	"	"	"
정용출	"	송파구	"

성 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임병두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5항에 의거 정년퇴직	송파구	지방행정주사
유희열	"	"	"
이혜중	"	강동구	"
김승규	"	"	"
황신화	"	"	"
유재덕	지방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의거 정년퇴직	중구	행정주사보
공순홍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5항에 의거 정년퇴직	용산구	지방행정주사보
연수명	"	중랑구	"
박용권	"	성북구	"
신영길	"	구로구	"
양홍준	"	동작구	"
전상규	"	관악구	"
박경열	"	"	"
윤완	"	강동구	"
장석일	"	양천구	지방행정주사
이도빈	"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권오락	"	"	"
김주호	"	성동구	지방토목기과
최인규	"	동대문구	지방보건기과
이병열	"	도봉구	지방축산기사
최화순	"	동작구	지방간호기원
김충덕	"	차량경비사업소	지방기계장(기능7등급)
한재인	"	서부건설사업소	"
홍사혁	"	마포구	지방전기원시보 (기능10등급)
정두신	"	상수도사업본부	"
추귀남	"	차량경비사업소	지방기계원시보 (기능10등급)
남주신	"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사무보조(조무) 시보 (기능10등급)
김안화	"	"	"
장삼영	"	"	"

성 명	발 행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영 호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5항 에 의거 정년퇴직	상수! 사업본부	지방사무보조(조무) 시보 (기능10등급)
신 전 철	"	"	"
유 재 기	"	"	"
한 동 욱	"	"	"
양 동 기	"	"	"
김 이 기	"	"	"
강 인 과	"	"	"
김 창 용	"	"	"
임 의 진	"	아동병원	"
함 입 분	"	건설자재사업소	"
박 석 현	"	서울대병원(사)	"
차 근 열	"	중 구	"
한 두 성	"	노 원 구	"
유 순 연	"	서대문병원	"
정 환 수	"	"	"
민 재 운	"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운전원시보 (기능10등급)
이 민 중	"	건설자재사업소	지방운전원(기능10등급)
윤 종 필	"	은 평 구	"
김 충 기	"	성 동 구	지방위생원시보 (기능10등급)
나 정 배	"	남지도쓰레기 처리(사)	지방방호원 (기능9등급)
이 현 구	"	시립운동장	지방방호원시보 (기능10등급)
안 연 순	"	새마을복지관	"
반 재 선	"	은 평 구	지방방호원시보 (기능10등급)
전 성 근	"	중 구	"
이 정 환	지방연구직 및 지도교공무원 의 임용통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의거 정년퇴직	마 포 구	"
변 재 현	서울특별시 지방법정직공무 원 인사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정년퇴직	농촌지도소	생활지도사
		승 파 구	지방법정직6등급상당

서울특별시 장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영호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5항에 의거 정년퇴직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사무보조(조무) 시보 (기능10등급)
신유한	"	"	"
양동기	"	"	"
김기환	"	"	"
이인순	"	"	"
김창용	"	"	"
임의환	"	이동병원	"
박석환	"	건설자재사업소	"
차근열	"	서울대공원(사)	"
한두성	"	중 구	"
유순임	"	노원구	"
유연중	"	서대문병원	"
정환수	"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운전원시보 (기능10등급)
딘이운	"	건설자재사업소	지방운전원(기능10등급)
윤재철	"	은평구	"
김충기	"	성동구	지방위생원시보 (기능10등급)
나경배	"	남지도쓰레기처리(사)	지방방호원 (기능9등급)
이현구	"	시립운동장	지방방호원시보 (기능10등급)
안만순	"	새마을회회관	"
반재철	"	은평구	지방방호원시보 (기능10등급)
전성근	"	중 구	"
이정환	"	마포구	"
변재환	지방연구회 및 지도회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의거 정년퇴직 서울특별시 지방별장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정년퇴직	농촌지도소	생활지도사
		송파구	지방별장직6등급상당
			서울특별시